

보 도 일 자

2012. 3. 9. (금) 조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I. 개요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CGS, 원장 姜柄皓)은 올해부터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KOSPI200 편입회사에 대해 **의안분석**을 수행하고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함
- 이미 주요 기관투자자에 공문을 발송하여 의안분석서비스 제공 계획을 안내하였고 향후 요청이 있는 기관투자자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
- 의안분석의 세부지침을 담은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고,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II. 제정 배경 및 절차

1. 제정 배경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도 국내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소극적 차원에 머무름
- 기관투자자의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의안을 분석하고 권고안을 제시할 **시장 인프라의 부족**에도 기인하므로 CGS에서 기관투자자에 의안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원칙과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개함

2. 제정 경과

-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 사례, 관련 모범 기준 및 국제동향을 심도 있게 검토
- 외부전문가 검토 및 감수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완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Ⅲ. 가이드라인의 제정 목적 및 특징

1. 제정 목적

-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방향과 세부지침을 제시
- 기관투자자의 경영감시 역할을 지원하고, 대상 회사에 지배구조 개선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
-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장기적 회사가치 제고, 경영 감시활동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
- 의결권 자문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여 업무의 일관성, 객관성, 신뢰성을 제고

2. 특징

- 관련 법규, 모범규준 및 기업지배구조 현황 등 국내외 동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포괄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제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상법(2011.4) 상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의 이사회 승인, (사외)이사 책임 감면, 집행임원제, 종류주식 발행 등 관련 지침 포함
 - 선임사외이사제도 도입,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보상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의 분리 선임, 임원별 보수 공시 확대 등 강화된 기준을 제시
- 권고안 제시의 근거 및 판단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IV. 주요 내용

1. 핵심원칙과 세부원칙

- ‘회사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핵심원칙으로 함
- 세부원칙: ①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 간 평등, ② 주주와 회사에 대한 책임 경영, ③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④ 이사회的高效적 구성과 운영

2. 전체 구성과 세부 항목

구성	세부내용
이사회 · 감사위원회 · 이사회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의장 자격, 사외이사 비중, 선임사외이사 제도 등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보상위원회 등 설치와 구성, 관련 규정 마련 및 공시
이사 ·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외)이사 · 대표이사 · 감사(위원) 자격, 대표이사 연임, 경영승계규정 ▪ (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감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 집행임원제, 이사선임 방식, 시차임기제, 집중투표제 등
임원 보수 · 성과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한도 수준, 성과연동 (주식)보상의 지급조건, 이연지급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조건, 행사가격, 행사가격 조정 ▪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연계 보상 및 퇴직 혜택 ▪ 환수정책, 임원별 보상의 개별공시, 퇴직금 등
재무제표 ·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승인, 배당 규모, 중간배당 · 현물배당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이익배당 승인
자본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증가 · 감소, 주식분할 · 병합, 주식소각 ▪ 신주인수권, 주식 제3자 배정, 종류주식, 자기주식 취득 · 처분 ▪ 주식연계채권 발행 및 제3자 배정
기업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 · 합병, 기업분할 및 분할합병, 상장폐지 ▪ 경영권 방어 전략
주주총회 및 주주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의결주체 · 회사명 · 회계연도 변경 ▪ 일괄 상정 안건, 정족수 변경, 전자투표 · 서면투표 등
기업내부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배구조규범 제정 ▪ 준법통제기준 마련, 준법지원인제 도입

3. 주요 세부 내용

지침 항목	세부 내용	도입 목적
1.3.1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안에 찬성함	이사회 독립성 제고
1.3.2 선임사외이사 도입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는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도입하는 안에 찬성함 ※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회의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함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1.3.3 상무담당이사 이사회의장 겸직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회사의 상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함	이사회 독립성 제고
4.2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독립성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배제하는 안에 찬성함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6.1 6.2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위원구성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거래("내부거래")를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해당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함	경영진·최대주주 이해상충 방지
6.3 내부거래 주총 승인	내부거래를 주총 승인사항으로 하는 안에 찬성함	경영진·최대주주 이해상충 방지
7.2 8.4 (사외)이사 손해배상책임 감면	(사외)이사의 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안에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칠 것, 해당 이사가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최근 1년간 보수액"에 반영하여 책임 한도를 합리적으로 정할 것 등을 전제로 찬성함	이사 책임성 제고, 이사 책임을 추궁 할 주주권 보호
8.1 사외이사 후보 결격사유	최대주주·자회사 등의 5년내 특수관계인, 해당 회사·최대주주의 주요 거래관계 법인 등의 3년내 특수관계인, 계열 회사·비영리법인의 5년내 임직원, 연속 재임 연수가 7년을 초과하는 후보 등에 반대함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10.4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감사위원이 될 이사와 다른 이사를 분리해 선출하는 안에 찬성함	감사위원 독립성 제고
11.1 집행임원제도 도입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찬성함	경영진의 책임성 제고

13.3 13.3.1 13.3.2 임원별 보수 공시 확대	보상 한도·내역·체계의 임원별 공시를 확대하는 안에 찬성함.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보수가 가장 높은 3인 이상의 이사, 보수가 연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사 등의 보상 한도·체계 등 개별 공개에 찬성함	이사보상체계 합리적 설계 위한 투명성·주주권한 확대
14.6 성과연동보상 이연지급	성과연동보상 중 60% 이상을 3년 이상 기간으로 이연 지급하는 안에 찬성	장기성과 지향 경영 유도
14.7 불법적 성과연동형 보상 환수	성과연동형 보상이 분식회계 등으로 왜곡된 기준에 근거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에 찬성	보상의 성과연계 확대
14.8 사외이사에 대한 성과연계보상	사외이사에게 성과급, 퇴직상여금 및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가와 연계된 보상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 반대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
18.3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당 결정	이익배당 결정을 이사회 결의로 하는 안에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배당정책 마련 및 공개를 전제로 찬성	배당 결정에 대한 주주권 보호
20.1 종류주식 발행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고, 악의적인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찬성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M&A를 부당하게 방어하기 위한 경우 반대함	자금조달원 다양화 및 주주권익 보호
23.1 주식연계채권 발행	전환사채 등 발행 안에 주주권 희석 정도, 재무 상황, 발행 조건,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면 찬성함	자금조달원 다양화 및 주주권익 보호
34.2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법령상 준법지원인 설치 의무가 없는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는 안에 찬성함	준법 경영 확대

(붙임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소개 1부.

(붙임 2)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 담당부서: Proxy Service 부문

담당자: 송민경 연구위원 (3775-3884, mksong@cgs.or.kr)

이민형 연구원 (3775-3724, leeminhyung@cgs.or.kr)

(붙임 1)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 소개

I. 설립목적

- 한국기업지배구조(2002년 6월 설립)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국내 상장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평가와 조사·연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의안분석서비스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및 검증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사회책임투자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II. 사원기관

-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III. 주요 업무

- ESG평가 및 등급부여
- ESG 우수기업 선정
- ESG 평가지표 개발 및 모범기준 제정·공표
- 의안분석서비스 제공
-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및 검증 서비스 제공
- CSR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 CSR 관련 조사·연구 및 발간
- 상장기업 대상 CSR 관련 교육 및 연수

IV. 연혁

- 2010. 08. 12 (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 개칭(정관 변경)
- 2010. 06. 01 강병호 제3대 원장 취임
- 2009. 09. 14 한국거래소와 SRI(사회책임투자)지수 개발
- 2009. 07. 16 유엔글로벌콤팩트(UN GC),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 가입
- 2008. 06. 18 ICGN 연례 컨퍼런스 및 연차총회 주최
- 2005. 04. 27 남상구 제2대 원장 취임
- 2004. 09. 17 기업지배구조 등급 공표
- 2003. 02. 17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
- 2002. 06. 24 법인설립, 정광선 제1대 원장 취임
- 2002. 06. 12 재정경제부장관 허가 취득

(붙임 2)

CGS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별책 참조